

2024년도 인권경영 추진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(안)

2024. 6

목 차

I. 추진 배경 및 실적	1
1. 추진 배경	1
2. 추진 실적	2
II. 비전 및 추진전략	3
1. 비전 및 2024년도 추진전략	3
2. 추진체계	3
III. 세부 추진과제	4
1. 인권경영 체계 강화	4
2. 인권경영 실행 및 점검 강화	5
3. 인권경영 의식 확산	6
IV. 추진 일정	7

1 추진 배경

- 인권경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 인권을 기관(기업)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범위에서 인권 존중을 실현
- 국제연합(UN)의 「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(2011.6.)」,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의 「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(2011.5.)」 등 국제적 합의와 규제가 점차 확대

□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, 제도개선 권고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

-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(2014.9.)」, 「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개선 권고(2016.2.)」 등
- 정부는 2018.8.7. 「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2018~2022)」을 확정하면서,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를 정책목표로 설정

□ 국가인권위원회 「인권경영보고 및 평가지침」 권고(2022.7)을 통해 객관성 있는 보고 및 정량적 평가 기준을 확립

- 기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한계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개선 방향 제시
- 인권경영 관련 보고사항을 총 5개 요소로 구분
 - ① 인권경영체계, ② 인권영향평가, ③ 구제절차, ④ 인권경영교육, ⑤ 종합적 평가 및 공개

□ 스톡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및 시행(2023.7)으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범위 확대

- 여성가족부 「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

② 추진 실적(2019년~2023년)

□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강화

- (추진시스템 구축 및 운영) 인권경영담당부서(감사실), 담당관(감사실장)지정, 「인권경영 이행 규정(2019 제정)」 등 인권경영 실행제도 구축 및 운영, 인권경영위원회 구성·운영, 임직원 인권교육·훈련 정기적 실시
- (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) 국토연구원 「인권경영헌장」 공표(2019.4.1.),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선포식 개최, 전 부서 확산 및 협력사 공유

□ 인권영향평가의 지속 실시

- (부문별 영향평가 실시) 연구부문 및 기관운영 관련 인권영향평가 실시(2019~2023), 연구기관 운영 부문 체크리스트 교육 실시(매년)
- (주요 인권 이슈 발굴) 인권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(중대성) 평가를 위해 ‘국토연구원 갑질 인식 및 실태 설문조사 실시(2019.11.)
※ 국토연구원 협력기관 대상 ‘인권침해 관련 설문조사’ 실시(2021.12~)

□ 인권 침해 구제 절차 마련 및 운영

- (인권침해 관련 원규 제정) 「인권침해 구제지침」 제정(2020.9.14.) 및 인권구제 절차 등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시, ‘청렴·인권옴브즈만’ 운영
- (내·외부 소통 채널 운영) 연구원 홈페이지의 ‘클린신고센터’, 연구원 내부 행정시스템에 ‘부조리 센터(상시 갑질 신고)’를 운영

□ 인권경영 교육체계 운영

- (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) 인권경영 담당부서가 대면교육,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(매년), 경영진 및 직급별 특화 교육 실시(매년)
- (인권존중 의식 확산 수단의 다양화) 인권관련 카드뉴스 게시(매년), 직원 참여형 「서로 존중하는 일터 만들기 가이드」 제작·확산(20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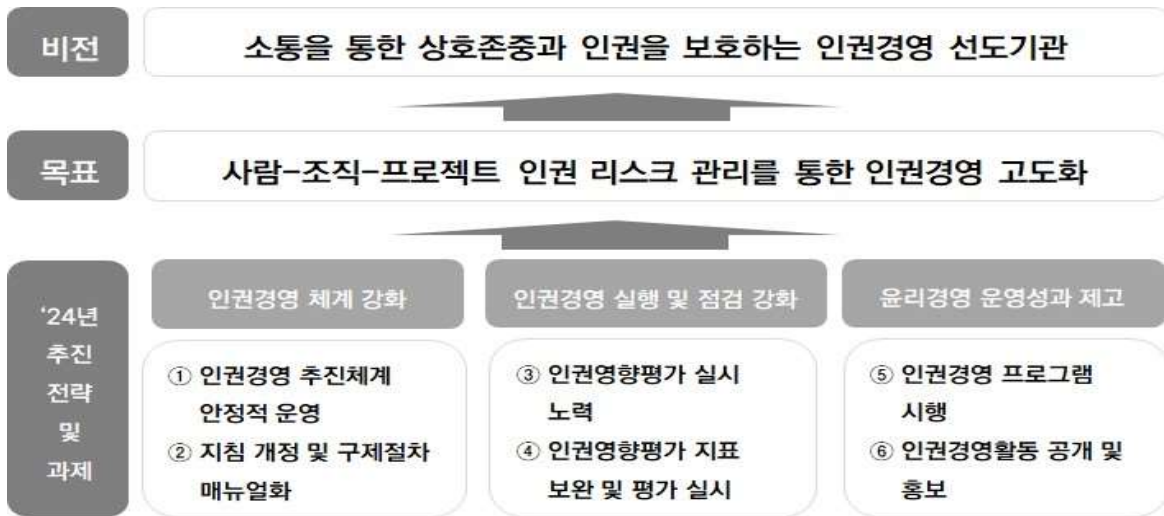
□ 인권경영 성과의 평가 및 공개

- (인권경영 성과평가)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종합적 평가와 인권경영의 개선 사항을 도출
- (인권경영 성과 확산) 연구원의 인권선언, 중장기 인권경영계획,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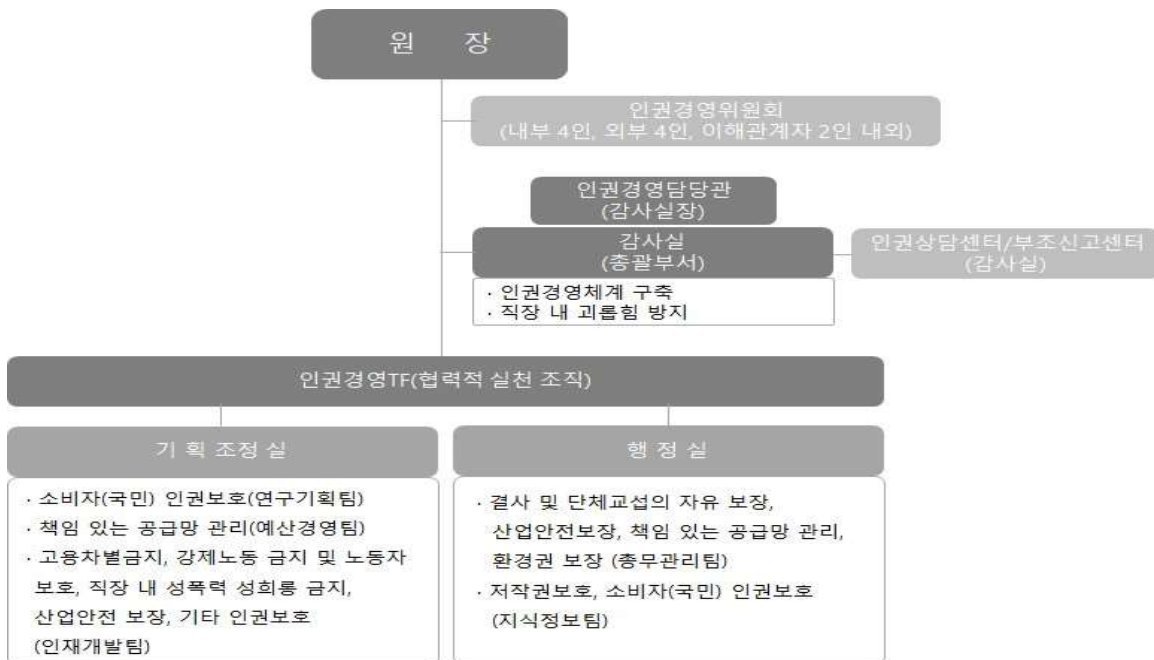
비전 및 추진 전략

1 인권경영 비전 및 2024년도 추진 전략

□ 「국토연구원 중장기 경영목표 및 추진 전략(2023~2026)」, 「국토연구원 인권 헌장」을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, 국가인권위원회 평가지침을 근거하여 추진 전략·과제 선정



2 추진체계



1] 인권경영 체계 강화

1-1. 인권경영 추진체계 안정적 운영

- (운영주기 확립) 매년 시행하는 인권영향평가, 이행현황 점검 등을 연내 적정 시기에 배분하여 체계적으로 이행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전년도 개선사항 반영/기본계획 수립	●	●		
인권영향평가 및 결과 도출			●	●
인권경영 개선사항 발굴				●
인권경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				●

- (인권경영 회의체 운영의 정례화) 인권경영위원회 연 2회, 인권경영 TF는 분기별 운영 추진
 -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검토, 인권의식 실태조사 준비 등을 위해 인권경영위원(원내·외), 실무진이 참석하는 소위원회 활동 추진
 - 인권경영 TF는 부서 간 협력활동 및 성과 공유, 주요 인권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 토의를 진행

1-2. 원규 개정 및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제작

- (인권경영 관련 원규 정비) 인권이행 규정(헌장), 인권침해 구제 지침(무기명 신고) 등 개정안 작성 완료, 감사실-노동조합 간담회를 통해 협의의견 청취 후 개정 추진 (6월 중)
- (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제작) 「인권경영 이행규정」, 「인권침해 구제지침」,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」, 「갑질피해 신고 등의 처리기준」 등의 구제절차를 종합적으로 제시, 인권경영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[참고자료1]
 - ※ 인권경영위원회 소위원회 검토 후 홍보 및 확산 예정(3분기 중)
- (인권보호 모니터링)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및 2차 피해 발생 예방, 전 직원 및 협력업체(인쇄업체)의 인식도 조사 등 실시[조사 계획 및 조사표 <참고자료2>]
 - ※ 조사결과는 인권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 평가와 함께 중대성 평가(인권영향의 우선 순위) 자료로 활용

② 인권경영 실행 및 점검 강화

2-1. 인권영향평가 실시

- (평가 개요)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기관(기업)의 활동과 사업관계의 결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임
- (평가 기준) 인권영향평가는 「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」와 「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」로 구분되어 있음

[국토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체크리스트(기관 운영) 비교]

구분	국토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	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체크리스트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(30건)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(30건)
2	고용상의 비차별(18건)	고용상의 비차별(14건)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(14건)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(16건)
4	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(8건) - 직장 내 괴롭힘 방지(7건) -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금지(10건)	강제노동의 금지(11건)
5	산업안전 보장(12건)	산업안전 보장(14건)
6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(10건)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(17건)
7	저작권 보호(3건)	현지주민의 인권 보호(10건)
8	환경권 보장(11건)	환경권 보장(10건)
9	소비자(국민)인권 보호(11건)	소비자인권 보호(18건)
10	기타인권 보호(9건) ※ 정보인권 보호(3), 일가정 양립(3건), 모성보호(3건)	아동노동의 금지(15건)

-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(기업)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, 인권경영 체제, 고용, 노동권, 산업 안전, 공급망, 현지 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
 - ※ 우리 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10개 분야 31개 항목, 143개 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평가 실시[참고자료 3]
-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,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임
 - ※ 우리 원은 연구부문 인권영향평가로 기본과제 중 7~8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평가[참고자료 4]

- (실시 기간) 2024년도 기본과제 중간연심회(6.17)부터 연말 결과 공개 기간까지 진행
 - 기관운영부문/연구부문 체크리스트 결과 취합(10월, 11월),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종합(10월), 중대성 평가 실시(11월), 종합결과 공표(12월 말)

2-2. 인권영향평가 지표 보완

- (수정·보완)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중 해당사항 없는 지표는 최근 이슈되는 사항으로 변경하거나 삭제(스토킹 방지 관련 내용은 원규 제·개정 후 반영)
 - [분야 6]의 지표 9번 및 10번은 해당없는 사항으로 삭제

[분야 6]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

항목	지표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	9	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,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.					
	10	연구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, 인권 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.					
	소계						

3] 인권경영 의식 확산

3-1. 인권경영 프로그램 시행

- (예방 캠페인) 인권 감수성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인권 콘텐츠를 홍보
 - 상호존중의 날(매 월 11일)을 활용하여 콘텐츠 홍보, 상호존중 문화 실천 캠페인 실시(상호존중 슬로건 공모 실시 중)
- (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경영 확산)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인식 개선 추진

3-2. 인권경영활동 공개 및 홍보

- (인권경영 성과 공개)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 실행과제 이행실적 등 전 과정의 인권경영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
- (인권경영 추진과정 공개) 인권경영 추진과정, 주요 성과를 홈페이지에 게시

추진전략	전략과제	세부 추진 내용	추진 일정(분기)			
			1/4	2/4	3/4	4/4
-	-	전년도 연구기관평가 권고사항 개선 준비(원규 개정안 준비 등)/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				
1. 인권경영 체계 강화	1-1. 인권경영 추진체계 안정적 운영	① 인권경영시스템 운영 주기 확립(감사실)				
		② 인권경영 추진조직 정기적 운영(감사실)				
	1-2. 지침 개정 및 인권 침해 조사	③ 인권경영 이행규정 개정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화(감사실)				
		④ 인권보호 모니터링 실시(감사실)				
2. 인권경영 실행 및 점검 강화	2-1. 인권영향평가 실시 노력	⑤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(감사실)				
		⑥ 인권관련 체크리스트 교육 실시(감사실)				
	2-2. 인권영향평가 지표 보완 및 평가 실시	⑦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수정·보완(감사실, 인권경영 TF)				
		⑧ 인권영향평가 실시(전 부서)				
3. 인권경영 의식 확산	3-1. 인권경영 프로그램 시행	⑨ 인권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(감사실)				
		⑩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경영 확산 노력(전 부서)				
	3-2. 인권경영활동 공개 및 홍보	⑪ 인권경영 보고서 공개(감사실)				
		⑫ 인권경영활동 공개(감사실)				